

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한철우

#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5년 8월 24일 연철흠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8월 2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2. 제안이유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노후·불량건축물의 범위 변경(안 제3조)
  - 종전 20년 ~ 40년 이하 ⇒ 개정 20년 이상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제한 조항 신설(안 제10조)
  -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,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·군사가 층수를 정함
- 감사원 조례 개정 통보에 따라, 의제되는 다른 법률 내 인허가

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조항 삭제(안 제14조)

#### 4. 검토의견

금번 개정조례안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개정에 따라 노후·불량 건축물의 연한을 20년 이상으로 하고, 15층 이하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층수제한을 시장·군수가 정하도록 하고, 감사원 조례개정 통보에 따라 의제되는 “다른 법률 내 인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에도 동일하게 적용”하는 조항 삭제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